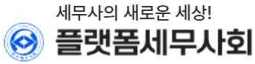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 천 지 방 세 무 사 회



☎ 2103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9, 2층(계산동) / 홈페이지 : www.incpta.or.kr
전화 032-225-0490 / 팩스 032-225-0491 / 사무국 국장 : 김성진 담당 : 조준구

문서번호 : 인천 제2026-166호

시행일자 : 2026. 7. 2.

수 신 : 전 회원님

참 조 :

직 인 생 략

제 목 : 소득세(성실신고), 기타실적회비 명세서(업무실적내역서) 제출 및 회비 납부 안내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회비납부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소득세(성실신고) 및 기타실적회비 명세서 제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6. 7. 31.(금)까지 제출하시고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비납부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비 납부기한 다음 해 4월 1일부터 경과월수에 따라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회비와 납부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세무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2025. 1. 1. ~ 12. 31.) 업무실적 내역서를 7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각각 제출하던 업무실적내역서와 기타수입실적회비 명세서를 통합하여 이중 제출에 따른 회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5. 이에 제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주신 회비는 회원님의 사업 현장을 지원하고,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붙임 : 소득세 및 기타실적회비 명세서,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안내 1부. 끝.

인 천 지 방 세 무 사 회 장

[소득세 및 기타실적회비 명세서,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안내]

■ 소득세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 · 회비납부

구 분	내 용
명세서제출 및 회비납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ta.or.kr)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 소득세실적회비 → 명세서 작성 → 회비납부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작성방법	* 실적이 없을 경우(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 등) “0”으로 입력 후 제출 * 세무법인의 명세서 및 실적회비는 구성원별 각자 제출

■ 기타실적회비 명세서 제출 · 회비납부

구 분	내 용
명세서제출 및 회비납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ta.or.kr)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 기타실적회비 납부 및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 명세서 작성 → 업무실적내역서 및 기타실적회비명세서 각각 입력 및 제출
업무실적 내역서	*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및 퇴임 시 직급 입력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전 직급 입력) * 업무실적이 없을 경우(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 등) 무실적(“0”)으로 표기하여 제출 * 건수 : 업체 건수 * 청구대리(A)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불복청구 등 * 세무조사 대리(B) : 세무조사, 특별조사 등 * 자문·고문(C) : 자문, 고문료 * 세무조정(D) : 법인세 조정, 소득세 조정, 성실신고 확인 보수액 * 장부작성(E) : 장부작성, 기장료 * 신고·신청대리 등(F) : 신고수수료 등 기타금액 * 합계(A+B+C+D+E+F) : 2025. 1. 1. ~ 12. 31. 1년간의 업무실적 (일자 변경 불가)
기타수입 실적회비 명세서	* 실적이 없을 경우(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 등) “0”으로 입력 후 제출 * 세무법인의 명세서 및 실적회비는 구성원별 각자 제출 * 세무사업무에 의한 총수입 입력금액(A)와 제출할 첨부서류의 총수입금액이 일치해야함 * 2025년 조정계산서 작성수입(B)은 2025년도에 신고한 법인세, 소득세 조정수입금액으로 수정 불가 * 업무실적내역서 합계와 2025년귀속 총수입금액은 동일해야함(12월 결산 기준)